| 인천광역시 | 보 도 자 료 |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
|---|---|---|---|
| | 배포일자 | 2023년 8월 1일(화)<br>총 5매 | |
| 담당부서 하 수 과 | 담 당 자 | • 하수계획팀장 김도연 ☎440-3701<br>• 담당자 조기현 ☎440-3702 | |
| 사진(이미지) | ▣ 없음 ☐ 있음 | 참고자료 | ☐ 없음 ▣ 있음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시, 2040년 목표로 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신도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수요대응 -**

**- 도시침수, 악취, 하천오염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 하수도 플랫폼 추진 -**

**-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검토 … ‘생산력 갖춘 하수도’ 로의 전환점 마련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오는 2025년 7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5년마다 하수도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의 원도심 개발계획 및 배후단지 조성계획, 3기 신도시(계양) 계획 등 인천광역시의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

도 수요대응을 위한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도시침수, 악취, 하천오염 등으로 안전,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① RDII 조사*를 통한 강우시 하수관리 방안 수립과 ② 우수토실** 조사를 통한 악취개선방안 수립, ③ 하수도 대장도 작성 및 보완을 통한 스마트 자산관리의 초석을 마련해 인천광역시의 스마트 하수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RDII(**R**ainfall-**D**erived **I**nfiltration **I**nflow) : 강우시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유입수 및 침투수 분석
** 우수토실 : 청천시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하천 및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을 검토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력을 갖춘 하수도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하수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과 하수 이송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진단 및 검토를 통해 싱크홀, 침수, 악취 등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도 수립한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내용을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고 목표한 단계별 계획을 완성하여 하수처리, 침수대응, 악취, 수질, 안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조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민구 시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계획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수요 대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강우관리, 악취개선, 처리방안 등 달라진 도시여건 변화

를 꼼꼼하게 반영한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개요

#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수계획팀 담당자 : 조기현 / ☎ 3702】

**추 진 목 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0.9.)」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2022.2.28. 수립된「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인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 하수도법 제6조(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3항 및 제4항

## □ 사업개요

○ 과업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강화, 옹진 포함, A=1,063㎢)

○ 용역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도대장도 작성

○ 용 역 비 : 3,627백만원(계속비 사업, 하수도특별회계)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60%), ㈜장원(30%) ㈜서영엔지니어링(10%)

○ 용역기간 : 2023. 8. ~ 2025. 7.(24개월, 환경부 승인기간 미포함)

## □ 추진실적

○ 2020. 9.: 2035년 인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환경부→市)

○ 2022. 2.: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

○ 2023. 3.: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감사관, 적정)

○ 2023. 4.: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 완료(회계담당관, 적정)

○ 2023. 5.: 입찰공고(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3.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7/25)

## □ 추진계획

○ 2023. 8.: 용역 착수

○ 2023.10.: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5. 상반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요청(市→환경부)

**참고** **관련법 발췌내용**

## □ 「하수도법」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